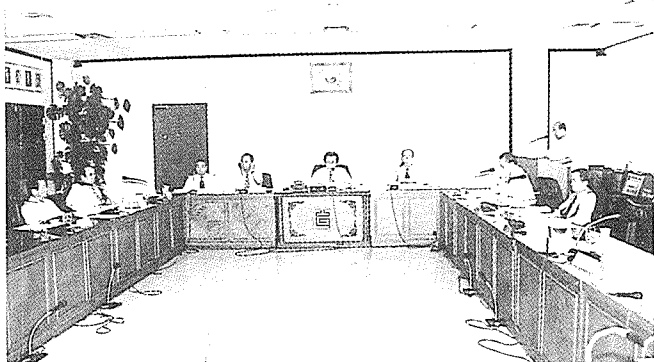


건설업체의 「건축사업 진출 규제완화」 요구, 행정쇄신 실무위원회에서 “부동의 결의”

행정쇄신위원회에 국민제안으로 상정된 이후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용역업 진출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지난 9월14일 개최된 제57차 행정쇄신실무위원회는 6월29일에 “조건부 부동의”로 결의되었던 사항을 재확인하고 부동의

조건으로 지시한 건설부의 “건축설계 용역업 육성계획(안)” 보고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실무위원회에서의 결의과정을 종결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사회 개최



이사회광경

본 협회의 주요 당면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지난 8월 12일(제27회)과 8월 23일(제28회), 그리고 8월 30일(제29회)에 각각 개최되어 보고사항에 이은 전회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회별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7회

- 행정쇄신위원회 자료제출에 따른 용역시행 승인의 건
- 총회에서 특별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므로 이사회 결의 안건에서 폐기하기로 결의함
- 시·도건축사회 간판제작에 따른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 예비비 사용을 부결하되, 간판제작 비용은 홍보선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함.
- 전문위원 위촉 승인의 건

— 명칭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급여를 “수당”으로 수정하여 운동식을 상근전문위원에 위촉하기로 결의함.

- 본 협회 경영진단 용역시행 승인의 건
-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95년에 추진하기로 변경하여 결의함.
- 행정쇄신위원회 관련 대책에 대한 협의
- 계속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함.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이용 홍보에 대한 협의
- 좀 더 연구하기로 협의함.

제28회

- 축사에 대한 설계·감리비 인
- 하요청 승인의 건

- 시·도건축사회 회장 연석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유보함.
- 노후·불량주택 진단업무 지침 개정(안) 승인의 건
- 건설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검토후 다음 이사회에서 결의하기로 하고 유보함.
- 예비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유보함.
- '94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 추천 승인의 건
- '94한국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회 결과를 보고 설계·홍보위원장 및 회장이 선임하도록 위임 결의함.
- 운영회비 및 연금회비 조정에 대한 협의
- 다음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협의함.
- 『건축사 수급계획에 관한 연구보고』에 대한 협의
- 토의된 내용을 수렴하여 연구보고서를 다시 정리하도록 협의함.

제29회

- 축사에 대한 설계·감리비 인
- 하요청 승인의 건

- 자영농가 증명을 첨부하면 신고시 35%, 허가시 30%로 경감하고 그외에는 50%를 경감하기로 협의함.
- 노후·불량주택 진단업무 지침 개정(안) 승인의 건
- 문구 수정 및 인원수 조정을 김인곤이사에게 위임하고 건설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결의함.
- 예비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소위원회(김인곤, 김규태, 이종관 이사)를 구성해서 검토후 다음 이사회에서 결의하기로 하고 유보함.
- 95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한 협의
- 검토후 다음 이사회에서 협의하기로 유보함.
-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협의
- 건설부에 제출할 자료를 이종만이사에게 위임하고, 제출된 자료를 임원에게 송부하기로 협의함.
- '94한국건축문화대상 심사위원 추천에 대한 협의
- 설계·홍보위원장 및 회장에게 위임함.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

건설부는 지난 8월 25일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중 건기법 21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내용중 기업체의 장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그가 시행하는 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해 용역사업 중 설

계를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시행령 54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②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감리업무는 설계의 연속과정으로써 시공과정에서 확인하는 업무이므로 설계자격을 갖춘 전문인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정신에서 현행대로 존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당국에 건의하였다.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 본격추진

최근 건설부는 건축사법 및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4. 8.25~9.14)하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활발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본격적인 입법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동 案은 94년 9월말까지 경제 장관회의를 거쳐 10월중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말경 국회에 제출하여 금년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

에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일부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통과 이전에 수정될 수 있도록 협회는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동법은 금년 정기국

회 통과 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준비된 후 95년 6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사법 주요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3.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 건축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건축물이 건축등을 위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고 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등을 위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고 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등을 위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고 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등을 위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고 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입법예고안에서는 건축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설계"와 "감리"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나 건축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재조정함.
4. "공사감리"라 함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경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등)		
①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①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①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①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①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19조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함.
제14조(응시자격)	제14조(응시자격)	제14조(응시자격)	제14조(응시자격)	제14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서 삭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서 삭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서 삭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서 삭제>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 경력을 가진 자	1.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1.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1.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1.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 부칙에서 2000년까지는 건축사보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만 통산 경력을 인정토록 함.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입법예고안에서 규정한 "건축직공무원으로 7년이상 근무한 자"는 삭제함.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1급 자격 취득 후 또는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자격시험 합격 후 7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1급 자격 취득 후 또는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자격시험 합격 후 7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1급 자격 취득 후 또는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자격시험 합격 후 7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1급 자격 취득 후 또는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자격시험 합격 후 7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연구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p>①건축주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기간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이를 시정 하도록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건축주는 당해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p>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건축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감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p> <p>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건축공사의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제76조의 2(건축분쟁조정위원회)	<p>①공사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건축에 관한 분쟁을 조정(건설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시·도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군·구에는 시·군·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위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민간자율신장에 따라 건축주체와 인근주민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신 설)					

'94건축사 2차시험 시행공고 확정 발표

본 협회는 94년도 건축사 2차 시험 시행공고를 지난 9월 10일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2차시험은 오는 11월 6일 서울고, 서초고, 양재고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분산, 실시될 예

정이며, 설계시험 과제명은 대학교를 제외한 학교시설로 정해졌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28일에 각 시·도 건축사회 개시관과 관보에 발표될 예정이다.

94년도 하반기 정기감사 실시

본 협회는 예산결감 유도과 물자관리의 효율화, 주요사업의 효과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부 및 각 시·도건축사회를 대상으로 94년도 하반기 감사를 실시한다. 본부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본부감

사(김춘배, 오인준)에 의해 현지 확인 감사가 실시되며, 각 시·도건축사회는 9월, 10월 중 각 시·도건축사회 감사에 의한 자체 감사를 결과보고에 의한 서면감사로 실시된다.

94년도 시·도 건축사회 정기총회 일정발표

94년도 시·도 건축사회 정기 회를 필두로 개최된다. 국회가 10월20일(목) 제주건축사

건축사회명	일시	장소	비고
서울건축사회	10.28(금) 13:30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부산건축사회	10.28(금) 10:00	파라다이스(해운대)	
대구건축사회	10.28(금)	미정	
인천건축사회	10.25(화) 10:00	올림포스호텔	
광주건축사회	10.28(금)	건축사회회관	
대전건축사회	10.26(수)	롯데호텔	
경기건축사회	11. 3(목) 10:00	수원부라운관광호텔	
강원건축사회	10.28(금)	춘천관광호텔	예정
충북건축사회	10.31	미정	
충남건축사회	10.28(금)	미정	
전북건축사회	미정	미정	
전남건축사회	10.21(금)	전남건축사회 회관	
경북건축사회	10.28(금) 11:00	미정	
경남건축사회	10.27(목) 10:30	창원관광호텔	예정
제주건축사회	10.20(목) 15:00	제주하나관광호텔	예정

'94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심사 발표



준공건축물부문 1차 심사장경

본 협회는 21세기 신 건축문화 창달을 위하여 서울경제신문사, 건설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94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81개 작품이 출품된 준공건축물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은 우원건축(분정일)이 출품한 민정학원이

선정되었고, 본상 4점(비주거3, 주거1), 우수상 2점, 입선 21점이 각각 선정, 발표되었다. 계획 건축물 부문에서는 신인부문 15점과 학생부문 127점이 출품되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22~27page 참조)

서울건축사회, 제2기 시민건축대학 강좌 개설



강좌장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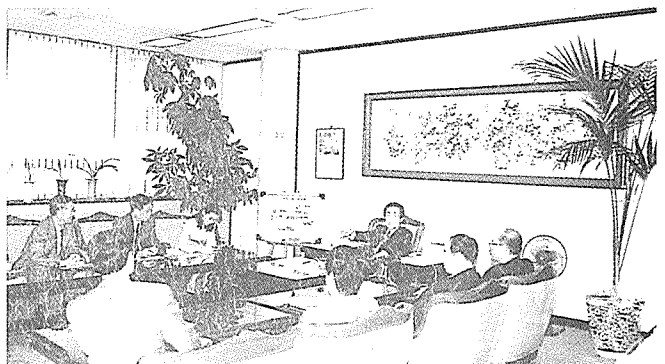
서울건축사회(회장 김영수)에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5개월 동안 진행된 「시민건축대학」 제1기 강좌에 이은 제2기 강좌가 9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개설된다.

강의 일자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강좌	강좌내용
9. 5	1강좌	풍수지리
9.12	2강좌	현대건축
9.26	3강좌	건축물 설계
10.10	4강좌	설계도면 읽는법
10.17	5강좌	건축행정
10.24	6강좌	내외장재료 및 설비재료
10.31	7강좌	주택의 에너지절약 지혜
11. 7	8강좌	주방계획 및 시공
11.14	9강좌	한국의 전통건축
11.21	10강좌	주거론
11.28	11강좌	건축물의 시공
12. 5	12강좌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의 VTR시청·수료식

중국 '세계 건축잡지사' 취재단 본 협회 방문



취재단과 오웅석회장과과의 환담장경

중국 북경건축설계연구원 부주임 황남익(세계 건축잡지사 고문)외 2명이 지난 9월 26일 본 협회를 방문하였다. 오웅석 회장과 함께한 이 자리

는 양국 상호 관심사와 중국세계 건축잡지 「한국 특집호」 발간을 위한 취재 및 양국 건축 교류 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됐다.

제37회 일본 건축사회 전국대회 개최

사단법인 일본건축사회 연합회에서는 오는 10.13(목)~14(금)일까지 일본 애히메(愛媛)현 현민문화회관에서 제37회 건축사회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세도나이(瀬戸)의 자연과 로맨스에 대하여”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 협회 기획부(581-5711~4)로 문의바람.

김수근 문화상 시상식 개최

김수근 문화재단에서는 제5회 김수근 문화상 시상식을 오는 10월 9일(일) 오후 5시부터 원서동 공간사옥 정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제5회 김수근 문화

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건축상/우규승(환기미술관)
미술상/박정환(조각가)
공연예술상/조수미(성악가)

'94건축가 포럼 개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윤승중)에서는 9월 28일(수)과 10월 21일(금) 오후 3시부터 홍사단 강당에서 '94건축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의 중진건축가들의 건축관은 무엇

인가”라는 주제로 그들의 건축을 조명하고 바람직한 건축사조를 세우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참석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참 석 자	주 제	비 고
김정철/강 혁(경상대학)	빛과 사랑의 건축	9월 28일 오후 3시
장석용/김봉렬(울산공대 교수)	제한된 조건들을 성숙시키는 작업은 그 시대의 인간 삶의 표정이다.	10월 21일 오후 3시

제6차 아카시아 건축사대회 (ARA-6)

- 기 간 : 1994. 12. 12~16
- 장 소 : 필리핀 국제컨벤션 센터
- 주 제 : 건축교육을 위한 혁신
- 행사내용 :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제4회 아카시아 건축학생잼버리
- 제2회 아카시아 건축상시상식
- 아카시아 북 출판기념회
- 기타 문화행사
- 신청및 문의처
대한건축사협회 기획부(TEL. 581-5711~4)

■ 세부일정

일 자	시 간	행 사 내 용	장 소
'94. 12. 11(일)	전 일	골프시합	Puerto Azul
12. 12(월)	09 : 00~12 : 00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	Puerto Azul 또는 Caylabne Bay Resort
	12 : 00~13 : 00	중 식	
	13 : 00~17 : 00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	
12. 13(화)	09 : 00~12 : 00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	
	12 : 00~13 : 00	중 식	
	13 : 00~17 : 00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	
12. 14(수)	08 : 00~17 : 00	등 록	필리핀 국제 컨벤션 센터
	08 : 00~12 : 00	관 광	
	12 : 00~14 : 00	중 식	
	14 : 00~18 : 00	제6차 아카시아 건축사대회 개최식	
		전시회 개막식	
		아카시아 북 출판기념회	
12. 15(목)	19 : 00~23 : 00	기타행사 개막	
		환영연회	
	08 : 00~17 : 00	등 록	
	09 : 00~12 : 00	학술토론회	
	12 : 00~13 : 00	중 식	
	13 : 00~17 : 00	학술토론회	
12. 16(금)	19 : 00~23 : 00	우정의 밥	
	08 : 00~17 : 00	등 록	
	09 : 00~12 : 00	학술토론회	
	12 : 00~13 : 00	중 식	
	13 : 00~17 : 00	종합토론회	
	19 : 00~23 : 00	환송연회	
		아카시아 건축상 시상식	
		아카시아 학생상 시상식	